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45호 2016. 3. 31(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272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273호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274호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 4
- 사천시 조례 제1275호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1276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사천시 조례 제1277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9
- 사천시 조례 제1278호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279호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22
- 사천시 조례 제1280호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31
- 사천시 조례 제1281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 사천시 조례 제1282호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41
- 사천시 조례 제1283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65
- 사천시 조례 제1284호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 67
- 사천시 조례 제1285호 사천시 향촌삼계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 사천시 조례 제1286호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614호 사천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74
- 사천시 규칙 제61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75
- 사천시 규칙 제616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76
- 사천시 규칙 제617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77
- 사천시 조례 제618호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21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71호 선진~신촌간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수립 고시 ---- 126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14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 131

회
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7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중 “확정 후”를 “확정 후”로 한다.

제6조 중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4,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하며, “연 3%”를 “연 1.5퍼센트”로 각각 한다.

제9조 중 “수회분납상환”을 “수 회 분납상환”으로 한다.

제16조 중 “종료후”를 “종료 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7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 국 주 무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을 “행정과장, 도시과장”으로 하며, “관계 유관기관”을 “유관기관”으로 하고 “인사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직원중에서”를 “직원 중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4)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7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비위근절을 위한 사천시 민간암행어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사천시 민간암행어사(이하 “민간암행어사”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3조(역할) 민간암행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및 복무상황 등 제보
2. 금품·향응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제보
3. 생활민원 불편사항 제보
4. 그 밖에 공무원 비위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5)

제4조(구성) 민간암행어사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원자 중 읍면동별 1명 내외로 한다.

제5조(자격과 위촉)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청렴결백하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터넷과 E-메일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

제6조(활동비 등) 민간암행어사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7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7)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7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9)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7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7호 중 “사천해양경비안전센터장”을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진주보훈지청장”을 “경남서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0)

①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7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2.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내”란 다음 각 목의 주소지 및 소재지가 시인 경우를 말한다.

가. 공설 화장시설은 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나. 공설봉안당은 화장한 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른 장소에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봉안당으로 옮겨오는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 공설자연장지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4. “관외”란 관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시립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 중 공설묘지의 위치는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15번지에 두며, 명칭은 사천시 공설묘지라 한다.

② 장사시설 중 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의 위치는 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송포동)에 두며, 명칭은 사천시 누리원이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3)

제2장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주민들의 장사시설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외 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 ① 제4조에 따른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권자의 주소 등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권의 승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의 권리·의무 순서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다.

③ 공설묘지의 분묘 및 묘비, 공설봉안당의 유골함, 공설자연장지의 표지석 및 용기, 유골 개장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과 별도로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7조(사용료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 중 공설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관내 거주자 중 만100세 이상의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4)

2.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 중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장소에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옮겨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만100세 이상의 사람

4.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공설묘지·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를 사용 중에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단위로 나누어서 실제 사용한 연수의 금액을 감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2. 사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5)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시로 귀속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권자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를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유골의 인도) 공설묘지·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의 유골을 인도 받으려면 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2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휴무) 시장은 매년 명절(설·추석) 및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장사시설을 휴무할 수 있다.

제3장 공설묘지

제13조(관리) 공설묘지의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천읍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6)

제14조(사용자격 등) ① 공설묘지는 공공사업으로 이장되어야 할 분묘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권자는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은 할 수 없다.

제15조(면적의 제한) ① 공설묘지는 기당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 범위에서 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묘지 사용권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기준 등)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공설화장시설·유택동산

제18조(화장 잔류물 처리) ① 시장은 화장 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된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을 유족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들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와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하여 매각 후 세입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유택동산의 사용 자격 등)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산골 할 것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택동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7)

제5장 공설봉안당

제20조(사용기간) ①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관내, 관외 구분은 최초 사용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② 2기(부부 등)의 경우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봉안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1조(사용방법) ① 공설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야 한다.

② 유골함은 도자기의 특성과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봉안당의 크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봉안당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를 둘 수 있다.

④ 유골함이 안치된 봉안당은 사용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폐하지 않는다.

제6장 공설자연장지

제22조(사용기간) ①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② 가족의 경우 사용기간은 최초 자연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사용대상) ① 공설자연장지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8)

1.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2. 시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3. 시 관할구역 또는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설자연장지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이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시설기준 등)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묘지 등의 설치

제2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제8장 보칙

제26조(손해배상 등)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9)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라 쓴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20)

[별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제2항 관련)

1. 공설묘지

가. 사용료

기준	사용료(원)	비고
3.3제곱미터당	30,000	

나. 수수료

종별	단위	수수료(원)	비고
묘지관리	1기	23,000	

2. 화장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성인(15세 이상)	1구	70,000	400,000	
소인(15세 미만)	1구	50,000	300,000	
개장 유골	1구	40,000	150,000	
태아	1구	35,000	120,000	
그 밖의 적출물	Kg	1,000	3,000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21)

3. 봉안당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봉안기간 15년	1기	200,000	1,000,000	
	2기(부부 등)	400,000	2,000,000	
봉안기간 10년	1기	140,000	사용불가	무연고

4. 자연장지

구분	기준	면적(m ²)	사용료(원)	비고
개인용	1구	0.25	300,000	- 사용료 : 30년 기준 - 기간연장(15년 단위)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족(2구)	1개소	0.50	600,000	
가족(4구)	1개소	1.00	1,200,000	
가족(6구)	1개소	1.50	1,800,000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2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7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불법운행자 또는 자동차 관리사업 불법행위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자동차 불법행위자”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23)

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 ①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불법행위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중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사천시가 아닌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를 접수하면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24)

제6조(처리기한) ① 시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은 필요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 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행위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2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26)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13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행정처분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하면 신고자와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같은 자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후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27)

제16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30)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31)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신고일자 및 관서	신 고 일 자		신 고 관 서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 장 용 인 감	
	계 좌 번 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8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32)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 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천시보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등)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33)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 2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중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부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34)

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② 시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천시보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35)

[별표 1]

모범사업자 지정시 고려사항(제5조 관련)

1. 공통사항
 - 가. 과거 2년간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실적
 - 나. 사천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완납 여부
 - 다. 종사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동차매매업
 - 가. 제시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의 조합 보관 여부
 - 나. 제시된 자동차의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
 - 다.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의 광고시 이력 등의 게재 여부
 - 라. 매매 또는 매매알선한 자동차에 대한 보증책임 준수
 - 마.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민원 발생 여부
3. 자동차정비업
 - 가.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원 수
 - 나. 고객 대기실 및 편의시설 구비
 - 다. 정비 완료시 점검·정비 명세서 발급 및 사후관리 내용 고지 여부
 - 라. 안전정비를 위한 시설·장비(3차원 컴퓨터 차체계측기, 차체프레임 수정기, 스포트 용접기, 휠얼라인먼트 측정기, 수용성 도장시설 등) 구비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가. 재사용부품 유통 실적
 - 나. 재사용부품의 이력관리 및 고지
 - 다. 재사용부품 이력관리 현대화(바코드 이용 등)
 - 라.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장고를 각 600㎡ 이상 설치
 - 마. 폐차인수차량의 사진 촬영 및 전송을 위한 장비 구비
 - 바.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실적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36)

[별표 2]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6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 가. 규격 : 50cm(가로) × 30cm(세로)
- 나.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지정번호 :

지정일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_____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사천시장

직인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노란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사천시의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37)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관리사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 지정 [] 재지정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4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8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4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8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 및 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과 사천시의 가로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42)

제2조(관리대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도로에 식재하는 수목으로써 시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뀌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절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

2.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3.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

4.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

5.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과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의 시설물

6.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43)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림(가로수)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가로수)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가로수)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가로수)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가로수)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가로수)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가로수)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림(가로수)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44)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 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이 조례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사항

제6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법 제20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해풍)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45)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보도(인도)의 유효폭이 최소 2.5m이상 확보된 도로에서 가로수 식재가 가능할 시 식재할 수 있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46)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는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제8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관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키 큰나무)

가. 식재 간격은 6~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 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식재로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 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마. 도로변 식재는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속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47)

2. 관목(키 작은나무)

가. 식재 간격은 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다. 지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기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9조(식재 시기) ① 가로수를 심는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심기가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가로수를 심을 때는 가로수 뿌리활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고무바·철사 등으로 된 분 결속물은 제거한 후 심어야 한다.

제10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 할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심어져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48)

③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1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심은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 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제12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49)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피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으로 가로수 줄기를 감아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50)

제15조(지형과 토양 보호) 시장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호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성토

다. 도로의 신설·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성토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51)

5. 동절기 도로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안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17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뀌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바뀌심기, 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가로수관리 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 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52)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의 신고
 5. 비상 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가로수에 전선이나 전구를 설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모든 행위
- ③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 시행)** ①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사업 등록업체, 조경식재공사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와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한 산림기술자에게 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53)

- ② 제15조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 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의 나무병원을 등록한 법인이 시행할 수 있다.
- 제20조 (가로수사업 승인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외의 사람 또는 법인(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관계법령과 절차에 의거 가로수를 식재·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사업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원인자부담금)**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원인자가 시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장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 시설물이 사고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요구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54)

③ 제20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하며,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2년간 예치토록 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
2.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이식함으로써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의 경우

⑤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원인자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또는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59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또는 법인이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55)

제23조 (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인 손괴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 등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 등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56)

제24조(관리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리청간의 협의에 따라 관리한다.

제25조(가로수 관리대장)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 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가로수사업신청에 관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57)

[별표 1]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제6조 제2항 관련)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1부터 4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58)

[별표 2]

도로 노선별 식재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조 성 기 준	비 고
① 광로 : 도로폭 40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병렬다층식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조성기준 적용 ※ 보도폭 ① 10미터 이상 ② 7~10미터 미만 ③ 4~7미터 미만 ④ 4미터 미만
② 대로 : 도로폭 25미터 이상~40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병렬식	
③ 중로 : 도로폭 12미터 이상~25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다층식	
④ 소로 : 도로폭 12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단열단층식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59)

[별표 3]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1조제5항 관련)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의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의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이식비(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2. 제거하는 경우
 -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의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세외수입)
 - 나. 관리청이 제거하는 경우의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 참고사항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의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등 시중가격 또는 견적이 적용하여 산정
-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 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60)

[별표 4]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가로수 피해액	보상금지급액	비고
10만원 미만	10,000원	※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0만원 ~ 50만원 미만	30,000원	
50만원 이상	50,000원	

※ 보상금 지급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61)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 승인 신고서(제20조제2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종 및 수량	규격	수고 : 직경(흉고 ,근원)	
이 식 사 유				
작업방법		인력, 장비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액	금 원정()		
	납부기간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auto;">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div>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사 천 시 공 보

제 445호 (64)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제25조 관련)

도로 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 종류	종류	좌우측	연장거리									
도로폭	차도	좌측보도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현황	최초조성 사업비					준공일 시공일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c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 틀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 타
가로수 관리 시설 현황 (본)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사 천 시 공 보

제 445호 (6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8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과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 도시과장”을 “행정국장·산업건설국장·세무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과장”으로 한다.

- ①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66)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67)

조례

사천시 조례 제128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법 제8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68)

제3조(유치업종) ① 사천시 특화단지 유치업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번호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을 말한다.

② 특화단지 우선 입주대상 업종은 산업통상자원부 특화단지 지원계획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제4조(대부기간) 특화단지 토지의 대부기간은 제3조제1항에 정한 업종의 경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한다.

제5조(대부료) ① 특화단지 토지의 연간대부료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영구시설물 설치) 특화단지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조례 제4조의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해당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제7조(특화단지 위치)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6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는 사천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중 종포 일반산업단지에만 적용하며,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경상남도 고시)에 따른다.

[별표 1]

사천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위치(제7조 관련)

구 분	종포일반산업단지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위 치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신촌리 일원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방지리 일원
면 적	377,160㎡	392,187㎡
지정일자	2014년 8월 7일	
지정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90호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70)

조례

사천시 조례 제128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향촌 삼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향촌 삼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향촌 삼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향촌삼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71)

제7조제1항 중 “별표 4”를 “별표 1”로 한다.

제11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4조 중 “배출일로부터”를 “배출일부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고지일로부터”를 “고지일부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5조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7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8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7조”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3조 제목을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사용변경 등의 신고”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해당할 때에는”을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73)

같은 항 제1호를 삭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을
“급수 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를 “에 따른 사용 변경”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제22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사항 및 규칙”을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부과하고 준공전”을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사용
승인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사용승인 전”으로 하며,
“필요한”을 “구체적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74)

규칙

사천시 규칙 제61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구분 중 “IV. 사후관리” 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75)

규칙

사천시 규칙 제61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본청의 국 주무과장” 을 “행정과장”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76)

규칙

사천시 규칙 제61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산업건설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행정국장·산업건설국장·우주항공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77)

규칙

사천시 규칙 제61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견습직원의 견습근무”를 “수습직원의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중 “전보제한자”를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78)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이어야 한다.

제22조제6항 중 “전직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를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79)

제28조제1호 중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를 “국정과제”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3, 별표 14, 별표 19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80)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급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농업기계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급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81)

공 업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급형설계, 사출급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급형, 사출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판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급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급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급형설계, 사출급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급형, 사출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판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전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래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급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 업 기 사 자 격 증 가 산 비 율 :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사 천 시 공 보

제 445호 (82)

공 업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원자 모조중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방사 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 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사 천 시 공 보

제 445호 (83)

공 업	일반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농산물관리관 리사
	잠 업	기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용적 용:가축인공수 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84)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에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에,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잡수 기능사 : 잡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85)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p> <p>가능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보건교육사3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p>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위생사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86)

환경	수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대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기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87)

시설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복제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 : 제퍼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88)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촌지도	농업기계	기술사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술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유희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술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직제어선반, 수직제어밀링,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판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술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술사 : 전자기기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술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술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89)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술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술사 : 염색 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술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술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학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술사 :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학약품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약품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술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술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술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술사 자격증 가산비용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90)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촌지도	잡업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용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농촌생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산업기사 : 인간공학, 생물공학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가공,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적용: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91)

농업연구	농공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급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조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조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용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산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용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임업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 : 산림 산업기사 : 학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 : 축산 기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능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어촌지도	어촌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92)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술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 수산제조, 식품 기사: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의공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능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학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93)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철도토목 ,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능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94)

[별표 8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반 기능장: 기계공학,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반설비(기계분야)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반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반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전자공학기체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케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반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반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전자공학기체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케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반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반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전자공학기체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케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반 기능장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반설비(전기분야)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반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95)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야 금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학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감 업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96)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술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기능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접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물검사	기술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97)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술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술사 : 조선 기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술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설	해양교통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 회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사전 시공보

제445호 (98)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정, 산림, 환경
	대 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정, 산림, 환경
	폐 기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정,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정,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정, 지적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사전 시공보

제445호 (99)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지 적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정, 지적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정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정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정 기능사 : 실내건축, 조정,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정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00)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계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 제 통 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급(3)	직업상담사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 화 흥 보	변호사				
	기 업 행 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교 육 행 정	변호사				
행 정	교 육 행 정	변호사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01)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 반 전 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 반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 반 선 박	1급 항해사(9)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 양 수 산	선 박 항 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 박 기 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 품 위 생	식 품 위 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사 천 시 공 보

제 445호 (102)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인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직업치료사(12) 방사선동위원소취급사(특수) 방사선취급사(일반) 방사선취급사(1급) 방사선취급사(2급) 방사선취급사(3급) 방사선취급사(4급) 방사선취급사(5급) 임상심리사1급(7) 임상심리사2급(3)	인상병리사(8) 방사선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직업치료사(8) 방사선동위원소취급사(1급) 방사선취급사(일반)(3) 방사선취급사(1급) 방사선취급사(2급) 방사선취급사(3급) 방사선취급사(4급) 방사선취급사(5급) 임상심리사1급(3) 임상심리사2급(3)	인상병리사(5) 방사선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직업치료사(5) 방사선동위원소취급사(1급) 방사선취급사(일반)(3) 방사선취급사(1급) 방사선취급사(2급) 방사선취급사(3급) 방사선취급사(4급) 방사선취급사(5급) 임상심리사1급(3) 임상심리사2급(3)	인상병리사(2) 방사선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직업치료사(2) 방사선동위원소취급사(1급) 방사선취급사(일반)(3) 방사선취급사(1급) 방사선취급사(2급) 방사선취급사(3급) 방사선취급사(4급) 방사선취급사(5급) 임상심리사1급(3) 임상심리사2급(3)	인상병리사(2) 방사선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직업치료사(2) 방사선동위원소취급사(1급) 방사선취급사(일반)(3) 방사선취급사(1급) 방사선취급사(2급) 방사선취급사(3급) 방사선취급사(4급) 방사선취급사(5급) 임상심리사1급(3) 임상심리사2급(3)	인상병리사(2) 방사선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직업치료사(2) 방사선동위원소취급사(1급) 방사선취급사(일반)(3) 방사선취급사(1급) 방사선취급사(2급) 방사선취급사(3급) 방사선취급사(4급) 방사선취급사(5급) 임상심리사1급(3) 임상심리사2급(3)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기(10) 항공기(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정비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기(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3) 항공기(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기(3) 항공기(3)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기(3) 항공기(3)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2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렬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 445호 (103)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공무원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 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칩두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학, 세라믹, 식품)	기사(화학류제조, 화학, 식품)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04)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폐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칩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보건의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약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0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06)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렬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년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07)

[별표1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1항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의사, 한의사	
의 무	의 무	치과	치과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술사(조선)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08)

직렬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중식,일 식,양식,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13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09)

[별표 14]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행 정	운 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사 회	사 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 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 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 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 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 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 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 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 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 차정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 계정비, 케도장비정비 , 기계설 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 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 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 공조립 ,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 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철도차 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 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 비 ,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 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 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 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 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 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 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 비 ,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 비 ,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 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 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 계, 기계공조립 , 생산자동화, 기 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 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 형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 분야)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 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 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 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 전기분야)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10)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작용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금 속 야 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 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재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 검사, 조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조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회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 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해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 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11)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류			
능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설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선박기관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위 생 사 역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12)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계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보건의료		간호사, 조산사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정장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장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정,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정,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13)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정)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정)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정)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정)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직렬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렬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14)

[별표 19]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8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직렬	계급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면허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 · 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정장비사	산업기사(유탄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 품질관리, 영상, 교통, 조선, 생산기계)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15)

직렬	계급	5 급	6급 · 7급	8급 · 9급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업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업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시,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16)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약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 호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사, 조산사	
보 건 진 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정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정,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정,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계,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정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정,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정, 지적, 지적기능, 교통)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17)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 목, 수 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정,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정,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토목시공,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정,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 송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 송 통 신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 송 통 신 (전 자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 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환경기능사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18)

직렬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정)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관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19)

직렬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학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해양 운영 선박관리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 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시)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시)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정,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정,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20)

2. 연구사	
직렬	계급
연구사	연구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효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구조, 선박기계, 항공기계,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에,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에,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권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해양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21)

3. 지도사	
직렬	계급
연구사	연구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정,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지도사	지도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정,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삭제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22)

[별지 제8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감재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용		성명	(한글)
란			(한자)
주민등록번호	-		

평정요소	위원 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 서명	성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우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보통	
			미흡	
		담당 확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23)

[별지 제9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감재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용		성명	(한글)
란			(한자)
주민등록번호	-		

평정요소	위원 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 서명	성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당 확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24)

규칙

사천시 규칙 제61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사용개시 등의 신고)”를“(사용변경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개시”를 “사용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시”를 “변경”으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25)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을 “조례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감면을 받고자
하는”을 “감면 받으려는”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가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은 삭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26)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6 - 71호

선진~신촌간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수립 고시

해양수산부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선진~신촌간 연안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연안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31.

사 천 시 장

1.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수립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선진~신촌간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의 장소 :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신촌리 일원

다. 사업의 목적

-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을 개선 복원하여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
- 연안상태 변동으로 훼손된 연안 해역개선 및 친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라. 사업의 변경사유

- 신촌리지구내 종포마을~화곡마을간 친수연안정비를 위하여 실시계획 반영

마. 사업의 규모 및 총사업비

- 1) 사업의 규모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27)

- 선진리 지구 : 수변공원조성 21,016㎡, 축제의 거리 L=461m,

물량장 신설 L=65m

- 신촌리지구 : 친수호안조성 L=1,661m, 해안도로 확·포장 L=330m

※ 연계사업 : 신촌지구 해안연결도로 정비사업 : 도로 확.포장 L=587m

- 2) 총사업비 : 22,810백만원

바.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장관

- 2)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사. 사업기간 : 2012. 07 ~ 2020. 1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28)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용현면 선진리	764-2	전	290	126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73-2	도	4,616	4,217	건설교통부					
용현면 선진리	1112	도	2,668	1,595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공유수면			2,455						
용현면 송지리	865-1	계	53	53	농수산부					
용현면 송지리	866-2	계	202	19	건설교통부					
용현면 송지리	866-12	잡	413	25	기획재정부					
용현면 송지리	866-11	도	2,865	184	건설교통부					
용현면 송지리	864-2	계	162	162	서택효삼랑					
용현면 송지리	1158-5	구	16,278	298	농수산부					
용현면 송지리	1158-10	계	228	228	농수산부					
용현면 송지리	862-2	계	56	56	건설교통부					
용현면 송지리	1191-2	계	4,624	4,624	건설부					
용현면 송지리	1161-6	구	10,777	534	농림부					
용현면 송지리	1161-13	계	3,551	3,551	농림부					
용현면 송지리	1161-12	유	24,550	202	농림부					
용현면 신촌리	571	계	638	638	건설부					
용현면 신촌리	568	천	18,155	352	건설부					
용현면 신촌리	571-1	도	209	209	건설교통부					
용현면 신촌리	공유수면1			1,860						
용현면 신촌리	공유수면2			25						
용현면 신촌리	공유수면5			3,304						
용현면 신촌리	공유수면6			55						
소계			90,335	24,772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29)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용현면 신촌리	409-1	대	644	64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용현면 신촌리	409-5	임	298	18	최준호	서울시 중구 황학동 2545 롯데캐슬 베네치아 102-3106				
					최화용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81-4-501				
용현면 신촌리	409-6	전	684	65	최준호	서울시 중구 황학동 2545 롯데캐슬 베네치아 102-3106				
					최화용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81-4-501				
용현면 신촌리	409-9	도	98	98	건설교통부					
용현면 신촌리	410-2	천	307	67	권순희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410-4				
용현면 신촌리	417-1	도	1,297	1,257	건설교통부					
용현면 신촌리	417-2	잡	898	898	재정경제부					
용현면 신촌리	565	도	9,905	27	건설부					
용현면 신촌리	417-3	잡	144	144	기획재정부					
용현면 신촌리	417-4	임	566	55	재정경제부					
용현면 신촌리	산28-3	도	265	29	건설부					
용현면 신촌리	527	전	364	364	이윤희	창원시 신월동 85-4				
용현면 신촌리	528	임	245	115	남양홍씨문정공파사천문중회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21-1				
용현면 신촌리	산30	임	992	407	남양홍씨문정공파사천문중회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21-1				
용현면 신촌리	529	임	119	119	안상모	진주시 평거동 192-1 들말한보타운 103-1108				
용현면 신촌리	574-2	도	2,580	1,258	건설부					
용현면 신촌리	483-13	임	139	139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39-3	담	383	383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39-1	전	271	271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40-2	담	57	25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44-1	대	379	123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공유수면3			96						
용현면 신촌리	공유수면4			3,890						
용현면 선진리	공유수면			18,444						추가
용현면 선진리	공유수면			2,236						추가
용현면 신촌리	공유수면			5,216						추가
소계			20,635	36,388						
합계			11,097	61,160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30)

자. 연계사업(신촌지구 해안연결도로 정비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용현면 신촌리	신30	임야	992	120	홍씨문정공파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21-1				
용현면 신촌리	529	임	119	119	안상모	진주시 평거동 192-1 들말한보타운 103-1108				
용현면 신촌리	530	답	1,967	75	이순조	사천시 용현면 화곡길 299				
용현면 신촌리	532	답	2,046	448	정대인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45-1				
용현면 신촌리	531	임	106	106	이현수					
용현면 신촌리	536-2	임	8,843	3,082	강영관	461				
용현면 신촌리	537	답	1,452	827	양춘지	대구시 달서구 계대동문로3안길 13-13				
용현면 신촌리	537-3	대	386	386	국	기획재정부				
용현면 신촌리	537-4	대	303	303	국	기획재정부				
용현면 신촌리	537-1	대	281	100	이성재외2인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49, 109동 1304호				
용현면 신촌리	537-5	잡	150	150	국	기획재정부				
용현면 신촌리	537-2	답	108	108	이순조	용현면 신촌리 557				
용현면 신촌리	557-1	전	1,167	143	유미애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63,213동 508호				
용현면 신촌리	557	전	99	99	이순조	용현면 신촌리 557				
용현면 신촌리	538	묘	1,841	863	김조현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19-6, 반도 보라아파트101-206				
용현면 신촌리	536-6	전	936	936	김계분	부산시 강서구 사취동2길 68				
용현면 신촌리	539-2	대	660	18	김정연	용현면 화곡길 280				
용현면 신촌리	539-6	답	298	37	김종갑	544				
용현면 신촌리	539-3	도	383	383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74-2	도	2,580	2,580	국	건설부				
용현면 신촌리	485	전	754	52	김성호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134				
용현면 신촌리	483-6	임	5,624	24	정대인	545-1				
용현면 신촌리	483-13	도	139	139	사천시					
계			31,234	11,098						

2.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해양수산과(☎831-3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45 호 (131)

고 시

사천시 훈령 제314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체육지원과 체육지원담당·체육시설담당·시설관리담당 사무분야 및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32)

[별표 1]

본청 과의 세부 분장사무(제3조 관련)

[행정국 소관]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체 육 지 원 과	체 육 지 원 담 당	1. 체육진흥 및 체육업무 기획 조정
		2. 시 체육회·스포츠클럽 지원 및 지도·감독
		3. 전국체전, 도민체전, 시민체육대회
		4.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5. 전지훈련팀 유치 및 관리
		6. 종목별 체육대회(전국·도·시 대회)유치 및 지원
		7.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8. 시장기(배) 및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9.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0.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2. 직장단체 체육에 관한 사항
		13. 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14. 과내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체 육 시 설 담 당	1. 종합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2.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445호(133)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체 육 지 원 과	시 설 관 리 담 당	1. 체육시설의 관리 기획 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
		2. 전문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관리 및 운영
		3.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4.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5.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처리
		6. 체육시설 입장료(사용료) 및 기타 수입 처리
		7. 생활체육시설물(체육공원 등) 관리 및 운영
		8. 체육시설물 위·수탁 운영
		9.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점검
		10. 그 밖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 영 장 담 당	1. 수영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수영장사용료 및 기타수입 처리
		3. 수영장이용객 수영강습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수영장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